

법무부령

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한동훈 (법무부장관)
연 월 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변호사시험법」의 개정 (법률 제19100호, 2022. 12. 27. 공포·시행)에 따라 「변호사시험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적 및 석차 공개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, 반환범위 규정

- 1) 「변호사시험법 시행령」의 위임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양식과 응시료 반환범위를 규정함

나.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

- 1) 석차 및 성적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인의 인적사항 및 응시 수수료의 반환사유를 기재한 별지 서식
2.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⑤ 영 제13조제4항의 응시 수수료의 반환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.

1.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거나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전액
2.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

제9조의 제목 “(불합격자의 성적 공개)”를 “(성적 및 석차 공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”을 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적”을 “성적 및 석차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

성명		응시번호	
생년월일		이메일	
주소	전화번호		
반환신청 사유	☐ 본인의 사고·질병으로 인한 입원 ☐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이나 격리대상자 판정을 받은 경우 ☐ 시험일 이전 7일 이내에 발생한 배우자, 본인의 직계혈족·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혈족·형제자매의 사망 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상황 ☐ 기타 사유 (위 사유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) (구체적 사유: _____)		
	※ 반환신청 사유 관련 유의사항 ○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별도로 반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. ○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. 다만,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가피한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 ○ 기타 사유인 경우,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다른 반환신청 사유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반환이 이루어집니다. ○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액, 응시 후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반액을 반환합니다.		
반환계좌	은행명	예금주	계좌번호
변호사시험법 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응시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합니다. 20 . . . 성명 (서명 또는 인) 법무부장관 귀하			
첨부서류	■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■ 반환신청사유 증명 서류 (국가나 의료기관의 증명서, 사실확인서 등) 1부 ■ 대리신청시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각 1부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본인의 인적사항 및 응시 수 수료의 반환사유를 기재한 별 지 서식</u> <u>2.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u> <u>⑤ 영 제13조제4항의 응시 수수 료의 반환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.</u> <u>1.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 회하거나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전 액</u> <u>2.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유 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시험 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:</u> <u>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</u>
<u><신 설></u>	
제9조(불합격자의 성적 공개) ①	제9조(성적 및 석차 공개) ① <u>법</u>

<u>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(疎明)하여야 하며,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<u>성적</u>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	<u>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<u>성적 및 석차</u> - ----- -----.
---	---